

포스포올 (FOSS for All)

임시총회

2025년 9월 12일 오후 10시 Google Meet 화상회의

의사일정

보고안건

- 1. 전차 총회 회의록 보고
- 2. 운영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

의결안건

- 1. 정관 개정 심의(안)
- 2. 2025년도 예산 심의(안)

기타안건

전차 총회 회의록 보고

자세한 자료는 앞서 공시된 회의록 자료로 갈음

https://fossforall.org/disclosures/meetings/general-meetings/2025-03-08-founding-meeting/

운영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

운영위원회 5회 개최

- 회비 규정 제정
- 주사무소 선정 및 계약
- 대표 직무대리 순서 지정
- 수익사업 심의의결 및 신고
- 단체 로고 및 브랜딩 확정
- 신규회원 가입 절차 확정

정관 개정 심의(안)

- 후원회원 제도 도입을 위해 정관에 후원회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
- 기존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고, 후원회원 및 정회원간 의무 및 권리 차이점 등도 명시
- 일부 용어 통일하여 정리 1/3 -> 3분의 1

기존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 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,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로 한다.

개정안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- ①.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,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- ②.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 <2025. 09. 12. 신설>
 - 1. <u>정회원: 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</u> 원
 - 2. 후원회원: 단체 운영에 참여하지 않지만, 회비 납부로 단체 운영에 기여하는 회원
- ③. 회원이 다른 유형의 회원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,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환할 수 있다.

기존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.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- ③.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개정안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. <2025. 09. 12. 개정>
 - 1.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다.
 - 2. 후원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.
- ②.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- ③.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<u>④. 회원은 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 <2025. 09. 12. 신설></u>
- <u>⑤. 회원은 각급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경우, 이를 적</u> <u>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. <2025. 09. 12. 신설></u>

기존

제9조 (임원의 선임)

- ①.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 며, 대표는 총회에서 임원 중에 선출 하다.
- ②. 단체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다.

개정안

제9조 (임원의 선임)

- ①.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 **원 중에서** 선출하며, 대표는 총회에 서 임원 중에 선출한다. <2025.
- 09. 12. 개정>
- ②. 단체의 감사는 총회에서 **정회 원 중에서** 선출한다. <2025. 09. 12. 개정>

기존
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- ①.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. 정기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,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<u>1/3</u>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6조 (총회)

- ①.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**재적 회원**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개정안
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- ①.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. 정기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,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<u>3분의</u>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<2025. 09. 12. 개정>

제16조 (총회)

- ①.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**재적 정회** 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<2025. 09. 12. 개정>

기존

제16조 (총회)

- ①.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 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<u>재적 회원</u>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한다.

제17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. 재적 <u>회원</u>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.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**회원**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 (회의록)

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, 출석한 운영위원 또는 출석한 **회원**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의 서명위원 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.

개정안

제16조 (총회)

- ①.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 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**재적 정회원**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<2025. 09. 12. 개정>

제17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.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<u>정회원</u>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2025. 09. 12. 개정>
- ②.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**정회원**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2025. 09. 12. 개정>

제19조 (회의록)

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, 출석한 운영위원 또는 출석한 **정회원**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 의 서명위원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. <2025. 09. 12. 개 정>

기존

제28조 (정관변경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**회원**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9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<u>회원</u> 4분 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. 이 정관은 2025년 09월 12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다.
- ②. 이 정관 시행 이전의 단체 회원은 시행 이후 단체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한다.

개정안

제28조 (정관변경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<u>정회원</u>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<2025. 09. 12. 개정></u>

제29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<u>정회원</u>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**<2025. 09. 12. 개정>**

부 칙

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. 이 정관은 2025년 09월 12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. 이 정관 시행 이전의 단체 회원은 시행 이후 단체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한다.

2025년도 예산 심의(안)

 https://docs.google.com/spreadsheets/d/1W1QWs_X - w8fw8X20kpWWEkBzzDRRyJN520z-SC0EqA/edit?gid=1478724421#gid=1478724421

기타안건

